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9.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9월 1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용하

가. 제안이유

동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25조(대부료의 등의 요율)제5항제11호를 신설하여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추가로 규정함.

- (2) 안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는 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 3개호를 신설하여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6호 제3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제7호 마포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3) 안 제34조제3항에서는 제5호를 신설하여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를 추가로 규정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구유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을 매입한 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 및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